

제 21 장  
예 외

제 21.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조세협약이라 함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 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제 21.2 조  
일반적인 예외

1. 1994년도 GATT 제20조는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 가. 그 장의 규정이 서비스 또는 투자에 적용되는 한도를 제외하고,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제4장(원산지규칙)·제5장(통관절차)·제6장(무역구제) 및 제14장(전자상거래), 그리고
- 나. 그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한도를 제외하고 제16장(정부조달)

2. GATS 제14조가호·나호 및 다호는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 가. 그 장의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한도 안에서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제4장(원산지규칙)·제5장(통관절차)·제6장(무역구제) 및 제14장(전자상거래)
- 나.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 다. 제10장(투자)
- 라. 제11장(통신) 및 제12장(금융 서비스), 그리고
- 마. 그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한도 안에서 제16장(정부조달)

제 21.3 조

## 국가안보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당사국이 간주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나.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당사국이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무기·탄약 및 전쟁장비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상품 및 재료의 그러한 거래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긴급상황시에 취하여지는 조치. 또는

(3)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또는

다.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당사국은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 제22.1조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 중에 그러한 조치와 그 종료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제 21.4 조

### 과 세

1. 이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양당사국이 당사국인 조세협약상의 일방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이 불합치하는 경우, 그 불합치의 범위 안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양당사국 간의 양자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단독책임을 진다.

3. 제2항에 불구하고, 제3.3조 및 동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범위 내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10.13조 및 제10.19조는 과세조치가 동 조에 규정된 수용을 구성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sup>21-1)</sup> 과세조치와 관련하여 제10.13조를 원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제10.19조에 따라 통보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을 수반하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여 먼저 제5항에 규정된 권한있는 당국에 조회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검토하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조회 후 6월 안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는 제10.19조에 따른 중재의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5. 이 조의 목적상,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21-1) 제10.13조에 관하여 과세조치가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고려사항이 관련이 있다.

- (1) 조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 또는 투자 한 건에 대하여 한 개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조세 부과는 그 자체로 저절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2)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특히,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3) 특정 국적의 투자자나 특정한 개별 납세자를 겨냥하는 것과는 달리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 특정한 과세조치가 투자가 행하여질 당시 이미 유효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 그 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가.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재무부 재정정책국장 또는 그 승계인 또는 싱가포르가 지정하는 다른 공무원
- 나.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또는 그 승계인

[날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국장  
김한수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2005년 월 일 [장소]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협정 제21장(예외)과 관련하여 제21.3조에 따라 당사국은 중요한 통신 기반시설을 무력화하거나 해손하려는 의도의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그러한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자국이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게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싱가포르 대표의 성명]  
[직위]

[날짜]

---

[싱가포르 대표의 성명]

[직위]

\_\_\_\_\_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월 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싱가포르측 서한 본문) .....

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